



## 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 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- 2)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3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51호
  - 예고기간: 2025. 11. 7.(금) ~ 11. 13.(목)[6일간]
 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### ○ 개정 목적

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의회 의원, 의회 위원회, 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의 주민 조례안의 청구인이 재정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하는 경우 의안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서 작성과 사전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 간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3조제1항) 예산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의 경우,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하고자 규정함
- (안 제5조) 재원조달방안 작성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로 제한하고
- (안 제7조) 비용추계서는 의안 제출 또는 업무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각 호에서 제출 시기를 정하였음

### 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의 ‘의안의 비용추계 제도’ 는 「국가재정법」, 「국회법」 및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 시행에 따른 비용 예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- 정부, 국회의 비용추계 관련 법령 등을 준거하여 개정하고, 개정의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에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,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.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1. 2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